

제 262 호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택 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1972. 7. 28.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보

차 례

이 양구보출하는 바이코르
리비오...
1972. 8. 1.

서울특별시 시정판

◎ 고 시

제 108 호 도시계획소토 신설 3

제 10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3

◎ 공 고

제 172 호 도시계획운동장 시설결정 4

제 174 호 서울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 4

◎ 사 령 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08 호

도시계획소로신설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2. 7. 27.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신설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등급	류별		8m	192m	동송동 31 - 7	동송동 129-208	
"	"					신당동	신당동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0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2. 7. 27.

서울특별시장

3.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	150	성북구미아리 348-1	미아리 707	
변경	"	3		6	180	"	"	위치 변경
기정	"	3		6	300	성북구미아리 670	미아리 403-7	
변경	"	3		6	296	" 670	" 403-7	위치 변경
기정	"	4		4	160	" 416-86	"	
변경	"	4		4	150	" 416-86	"	
기정	"	3		6	100	서대문구응암동 197-31	응암동 214-3	위치일부 변경 및 가각조정
변경	"	3		6	100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은 서울특별시청 관할 구청시민봉사실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72 호

도시 계획 운동장 시설 결정

1. 당시 관내에 건설부 고시제 284 호 (72.7.11)로 운동장 시설 결정 고시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관계 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2. 7. 24.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운동장 시설 결정 조서

구분	명칭	위 치	설정 면적	비 고
신설	운동장	영등포구 온수동 및 오류동 일부 지역	38,837 m ²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공고제 174 호

서울 도시 계획 공원 일부 변경

- 서울 도시 계획 공원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변경 공고되었기 (건설부 고시제 283 호) (72.7.11)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관계 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2. 7. 25.

서울특별시장

1. 공원 변경 조서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봉공원	서대문구 평창동	54,145.01 m ²	413,347 m ²	5,827,848 m ²	개발제한구역 경계로 환원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할 것임.

사 령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김신	정촌 근	도시 계획 과	지방 토목 기사
		" " "	" 토목 기사보
이동	섭식 원	구획정리 제 1 과	" 토목 기사
		" " "	" " "
조성	순현 현	" " "	지방 토목기원보
		구획정리 제 2 과	토목 기사
윤박	나용 진	" " "	" " "
		구획정리 제 2 과	지방 토목 기사보
강안	희신 지	" " "	" 토목기원보
		" " "	" " "
유최	석우 숙	토목 과	지방 토목 기사
		" " "	" " "
박한	수연 인	" " "	지방 토목 기사보
		" " "	" " "
조이	원주 완	" " "	" " "
		" " "	" " "
김최	신영 명	구획정리 제 2 과	지방 토목기원
		구획정리 제 1 과	" " "
김최	정영 진	구획정리 제 1 과	지방 토목기원보
		성종 급	지방 토목기원
정우	박이 엄	관리 제 2 과	" " "
		하수 과	" " "
공구	김경 만	구획정리 제 1 과	" " "
		" " 제 2 과	" " "
김행	영열 형	서대문 구	" 토목 기사보
		영등포 구	" " "
김행	영열 형	구획정리 제 1 과	" 토목기원
		중로 구	" " "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박종오	마포구	시설화	지방토목기원
조광익	영등포구	수원과	지방토목기사보
이흥병	중로구	"	지방토목기원
변연찬	서대문구	"	"
우길연	주택행정과	단속과	지방토목기사보
박상웅	중구수도사업소	중로구	지방토목기사
유동재	동대문구수도사업소	동대문구	지방토목기사
홍성정	서대문구	서대문구	"
유성성	"	마포구	"
허성성	종로구	용산구	"
안희태	동대문구	영등포구	"
장기순	성동구	역청사업소	"
이영재	성북구	토목시험소	"
박종석	동대문구	중대문구	"
정해운	동대문구사업소	성북구	지방토목기사보
김해상	종로구	영등포구	"
유규현	구의리수원지사무소	동부건설사업소	"
이정공	성동구수도사업소	동대문구	지방토목기원
조수창	동대문구	"	"
김용진	"	"	"
김용주	성동구수도사업소	"	"
조정성	대현산배수지사무소	성동구	"
한성우	구의리수원지사무소	성북구	"
안점희	성북구수도사업소	용산	"
유상갑	수도관리사업소	영등포구	"
박제현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서문문구	지방토목기원보
도차주	서대문구	마포구	"
김정봉	영등포구	남부건설사업소	"
조평치	성동구	역청사업소	"
지석한	영등포구	서대문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
한정경	"	"	지방토목기사보
	서대문구	영등포구수도사업소	"
	토목시험소	영등포구	"
	수도관리사업소	성동구	지방토목기원
	지하철건설본부	성북구수도사업소	"

민방위과	지방행정주사	이내수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신동휘
환경순찰관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2 호	
마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유경상	에 의거 파면에 처함	
환경순찰관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현춘환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김박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2 호에	
환경순찰관	근무를 명함		의거 파면에 처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조명환	◎ 1972. 7. 25.	
환경순찰관	근무를 명함		시 민 과 지방행정주사	김종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추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청소제 1 과	근무를 명함		관리 2 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상길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서진옥	직위해제중	
관리제 2 과	근무를 명함		복직을 명함.	
녹지과	농림기사	김응태	성동구 근무를 명함	
환경순찰관	파견근무를 해제함		서대문구 지방토목기원	최일성
북악공원	지방농림기사보	양상욱	수도사업소	
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에	
환경순찰관	근무를 명함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토목과	지방토목기사보	손기만	중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권혁두
환경순찰관	파견근무를 해제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에	
주택건설과	지방건축기사보	이계환	의거 정책에 처함	
(환경순찰관파견중)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토목기원보	서기석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수도사업소	
토목과	지방토목기원	김학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에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의거 정책에 처함	
양묘장	지방농림기원보	송기남	신촌보조 지방전기기사	김석주
환경순찰관	파견근무를 해제함		수원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	
			서대문구 지방토목기원	김순기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용산구보건소 지방의두기좌	이정욱
			(보건지도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이규상	자 동 차 지방행정주사보 장수암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부녀과 지방행정주사 엄주용	마포병원 지방행정주사 장석준
마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청소제2과 지방행정주사 손홍구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윤희균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마포병원 근무를 명함
기획과 지방행정주사 김형철	(서울특별시) 이사관 김원하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심력주	공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자현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 박유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이용국
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함
한강건설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정준민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최해식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박병만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윤미원
대현산배수지사사무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함동운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전병주
성동구 근무를 명함	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이안규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민원철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함
시민회관 지방행정주사 김우영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민원철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함
시민회관 지방행정서기보 최경순	중 구 지방행정서기 홍순동
용산구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함
아동보호소 지방행정주사보 최상울	중 구 지방행정서기 홍순동
마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함
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오건영	
중구 근무를 명함	

부녀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석현
성동구 근무를 명함.

시민과 지방행정서기 손혜자
부녀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김용근
부녀과 근무를 명함.

부녀과 지방행정서기 원유숙
용산구 수도사업소 근무
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 한상대
부녀과 근무를 명함.

시민회관 지방행정주사 김우영
서울특별시 소청심사 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72.4.21자(발령제 215호)
징계처분(건축)을 동일자
로 처분 취소함.

녹지과 지방농림기과 전채규
조림보호계장
북악공원관리사무소장 직무
대리를 명함.

북악공원관 김중호
리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를 명함.

남산공원관리사무소 강정생
소장 지방농림기과
녹지과 조림보호계장에 보함.

◎ 1972. 7. 26.

동대문구청 지방타자원 김명순
소방본부 근무를 명함.

춘천시보건소 지방간호기원보노금자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간호 기원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중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계천군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연달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보건기원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김재춘

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영등포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한상운

조건부 지방보건 연구원보
에 임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 1972. 7. 27.

영등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황인섭
72.7.7 서울특별시 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2.4.21자 감봉1월 처
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이 정 환
 72.7.7 서울특별시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2.4.21자 견책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신 중 권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영등포구 지방건축기원보 성 흥 창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
 호에 의거 감봉 3월에 처함.

성 북 구 지방건축기사 신 현 갑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영등포구 지방건축기사보 엄 기 철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
 호에 의거 감봉 3월에 처함.

중구수도 지방토목기사 우 상 응
 사업소
 종로구 파견 근무를 명함.

중 로 구 지방토목기사 김 정 근
 중구 수도사업소 파견 근무를 명함.

건 설 부 건축기사보 정 한 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국립경찰병원 간호기사보 유 신 자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간호기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용산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